

아파트공급표준계약서

□ 재산의 표	돈시				m²
				(평형)
	아파트	동	호		

	¬ н	면	적
	구 분	m²	평
	전용면적	m²	평
	주거공용면적	m²	평
건 물	공급면적	m²	평
	세대별기타공용면적	m²	평
	(초과 지하면적)	$($ $m^2)$	(평)
	계약면적	m²	평
대 지	공유지분	m²	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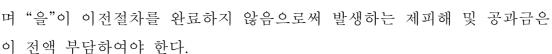
- □ 부대시설(공용) :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·도로·상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을 "갑"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"을"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- □ 입주예정일: 년 월(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키로 함)

제1조(공급대금 및 납부방법) "갑"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"을"은 해당금액을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	대지	건물	부	가	추고	2급			중	5		금		잔금	계약자
구분							계약금	1회	2회	3회	4회	5회	6회		
	가격	가격	가키	시세	금	액		()	()	()	()	()	()	(입주시)	선택날인
기본형															
/12 8															(인)
선택형															
(%)															(인)

- 제2조(계약의 해제) (1) "갑"은 "을"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- ① 제1조에서 정한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 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(단,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이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)
 - ② 잔금을 약정 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
 - ③ "갑"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"을"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"갑"에게 대신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"갑"이 14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"을"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, 단, 최고시 「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이 계약을 해제하며,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,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」는 취지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.
 - ④ "을"이 청약저축등 입주자 저축을 타인명의로 가입하였거나, 가입한 자의 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을 사실상 양도받아 계약을 체결한 때
 - ⑤ 기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- (2) "을"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"갑"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 - (3) "을"은 "갑"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 - (4) "을"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"갑"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.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"갑"의 "을"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"을"의 불이익은 "갑"이 책임지지 아니한다.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.
- **제3조(위약금)** (1) 제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%는 위약금으로 "갑"에게 귀속된다.
 - (2)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"갑"은 "을"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%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.
 - (3)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"갑"은 "을"이 이미 납부한 대금(단,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)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 일까지 연리 ()%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"을"에게 환급한다.
- 제4조(분양권 전매) (1) 분양권 전매는 "갑"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 - (2) 제1항에 의한 분양권 전매는 승인신청시 "갑"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,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"갑"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.

- 제5조(할인료,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) (1) "갑"은 "을"이 중도금을 약정일 함께 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년()%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물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. 단,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최초일부터 종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(2) "을"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"갑"과 "을"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 - (3) "갑"은 이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"을"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.
 - (4) 천재지변 또는 "갑"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될 경우에는 "갑"은 이를 "을"에게 통보키로 하며 이 경우 제3항에서 정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- 제6조(중도금 및 잔금납부) (1)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장소는 "갑"이 지정·통보하는 은행으로 하며 "갑"은 중도금 납부일을 "을"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.
 - (2) 개인별로 은행에 신청하여 융자받은 중도금은 제1조에 명시된 중도금 납부일자에 "갑"에게 입금(납부)되어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는 이 계약서상의 연체요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한다.
- 제7조(보증책임) "갑"이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(사용검사를 포함한다)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(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)의 책임을 진다.
- 제8조(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의 부담)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체되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은행융자금이 "을"에게 지급(대환)되는 날까지 은행대출금리에 의하여 "갑"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(단. 국민주택에 한함)
- 제9조(소유권 이전)(1) "갑"은 본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 기를 하도록 한다.
 - (2) "을"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"갑"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"을"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





- (3) "갑"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,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, 공부 미정리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"을"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- (4)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되며 "갑"은 "을"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양하지 아니하며 "을"은 공유지분의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.
- (5) 계약시 체결된 건물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 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한다.
- 제10조(지번의 변경) 목적물의 지번은 필지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.
- 제11조(제세공과금의 부담)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"을"이 부담한다. 단, "을"의 불이행으로 인해 "갑"이 입은 손해는 "을"이 배상한다.
- 제12조(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) "을"은 공유시설물(기계실, 전기실,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등)및 부대복리시설(공중변소, 노인정, 어린이놀이터 등)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.
- 제13조(관리) 건물 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.
- 제14조(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) "갑"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"을"로부터 징수,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.
- 제15조(하자보수) (1) "갑"은 당해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 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.
 - (2) "을"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"을"이 보수 유지한다.
- 제16조(화재보험)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"을" 은 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"을"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.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등으로 발생하는 제반피해는 "을"이 책임진다.

- 제17조(입주절차) (1) "을"은 공급대금 및 연체료를 기일내에 완납하고 "결정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 첫
 - (2) "을"은 입주시 관리예치금을 납부한다.
- (3) "을"은 "갑"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. 단,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시는 실입주일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.
- (4) 본 아파트의 입주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.(단, 이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)
- 제18조(기타사항) (1)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내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다. 단, "갑"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, 품귀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, 동가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다.
 - (2) 견본주택(모델하우스)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,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일 이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신고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"갑"은 이를 "을"에게 통보키로 한다.(단, "갑"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기간마다 그 변경내용을 모아서 "을"에게 통보할 수 있다.)
 - (3)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"갑"과 "을"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.
 - (4)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"갑"과 "을"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.
-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시 2통을 작성하여 "갑"과 "을"이 각 1통 씩 보관한다.

2000년 0월 0일

메	주	소					
도인	성또상	편이니 네	ପ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
υΉ	주	소					
수인	성또상	땅내여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